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비 공시 의무화〉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7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증권 거래비용 등 자금 운용비 공시 의무화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9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07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0.
- (3) 회 부 일 : 2025. 1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비와 증권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비 공시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할 때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후단 신설> ② (생략)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방법. 이 경우 공시 대상에는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5조¹⁾는 기금운용위원회로 하여금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금운용지침에는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최근의 기금운용지침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규정된 ‘공시 주기(월별·분기별·연간·수시)에 따른 공시 대상 정보’에는 ‘기금의 조성·지출·적립 현황’과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공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고,²⁾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하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제104조제6항)’와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시하는 ‘기금의 운용 내용(제107조제4항)’에서도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³⁾

1) 「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시행일: 2025. 1. 1.>

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② 공단은 별표 5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 종목 등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6개월 이전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민연금법」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은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하여 구한 ‘금액가중수익률’을 주로 활용하여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에 관한 사항을 매월 공시하고 있는데,

매매·평가이익(외화환산이익 포함), 이자·배당·수수료 수익, 외환차익 등을 모두 합산한 ‘총수익’에서 매매·평가손실(외화환산손실 포함), 외환차손, 거래비용, 운용보수, 수수료비용, 그 외 각종 직·간접비 해당액 등을 모두 합산한 ‘총비용’을 뺀 금액을 ‘운용평잔’(일별장부금액의 합산액을 운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가중수익률만으로는 자산군별로 그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한됨.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별표 5] 공시 대상 정보(제25조제2항 관련) >

구분	공시 대상
월간공시	■ 조성·지출·적립 현황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분기공시	■ 주식 대량보유 내역 ■ 채권 종류별 운용 현황 ■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7조(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내용 및 사용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실무평가 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구분	공시 대상
연간공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 내역 - 주식 섹터별 운용 현황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운용 현황 - 해외투자 지역별 운용 현황 - 증권위탁 펀드별 운용 현황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 국내·해외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 - 국내채권 발행기관별 투자 현황 - 해외채권 종목별 투자 현황 - 대체투자 투자 종목(펀드)별 투자 현황(유형, 위탁 펀드명, 금액 등) 및 대체투자 관련 통계치 ■ 책임투자 관련 현황 -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계획, 조직 및 활동내역 -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준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위탁·직접 구분) 및 운용규모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 현황(공시대상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중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종목별 현황) -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현황, 성과평가 기준
수시공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규정과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다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경우 세부 반대사유 공시 제외 ■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자료: 국민연금공단

□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여 기금운용지침을 매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금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대체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기금의 적립규모는 연평균 약 10.8%씩 증가하여 2025년 말 기준 약 1,428조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채권 및 대체투자의

위탁운용 수수료 규모도 함께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2.9조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⁴⁾에 따라 당분간은 기금의 적립·운용 규모가 계속 늘어나 위탁운용 수수료를 비롯한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 없이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공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기금 운용의 수입과 지출 측면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기금 관리·운용의 투명성 확보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국 내			해 외		
		주식	채 권	대체투자	주식	채 권	대체투자
2020년	13,750	1,304	294	1,541	3,181	309	7,120
2021년	23,425	1,833	315	3,301	3,980	422	13,573
2022년	27,292	1,649	305	2,846	3,830	526	18,137
2023년	24,844	1,637	324	2,509	4,270	540	15,564
2024년	28,857	1,667	354	2,297	5,085	590	18,863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25) 9% → ('26) 9.5% → ('27) 10% → ('28) 10.5% → ('29) 11% → ('30) 11.5% → ('31) 12% → ('32) 12.5% → ('33~) 13%

□ 첫째, 개정안은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각종 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나 위탁운용 수수료 외에 정보수집비·해외사무소 운영비 등의 기타경비와 인건비 등이 기금 운용과 직접 연관되는 비용인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시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을 ‘매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현행과 동일)의 기금운용지침 수립 주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개정 주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⁵⁾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는 이 지침의 내용을 1년 단위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⁶⁾ 실제로도 기금운용지침은 연중 수시로 개정되어왔음.

5)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시행일: 2025. 1. 1.>

제26조(지침의 검토 및 개정)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최근 10년간 기금운용지침 개정 연혁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횟수	1회	1회	0회	4회	5회
개정 일자	'15. 06. 09.	'16. 04. 08.	-	'18. 03. 16. '18. 04. 27. '18. 05. 30. '18. 07. 30.	'19. 05. 03. '19. 05. 31. '19. 10. 11. '19. 11. 29. '19. 12. 27.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횟수	5회	3회	3회	0회	3회
개정 일자	'20. 02. 05. '20. 05. 20. '20. 07. 31. '20. 10. 30. '20. 12. 16.	'21. 01. 29. '21. 04. 09. '21. 05. 03.	'22. 04. 29. '22. 09. 23. '22. 12. 16.	-	'24. 05. 02. '24. 05. 31. '24. 12. 19.

주: 2026년 1월 13일 현재

자료: 국민연금공단

□ 셋째, 개정안에 따라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그 공시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등 하위법령의 개정소요가 있게 되므로,

안 부칙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공시 대상 정보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다만,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는 심의·의결 단계에서 공시 범위와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안 제105조 제1항제5호에서 예시한 “증권 거래비용 등”은 삭제하고,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